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23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유용원 · 김소희 · 김예지  
조승환 · 성일중 · 이현승  
강선영 · 김은혜 · 윤한홍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존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중대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험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존,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임시 확보·제공 및 가입자정보의 확인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한 긴급 공조요청)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의 멸실 또는 변경의 위험이 현저하고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존, 로그기록 등의 임시 확보 등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직접 공조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공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긴급 공조요청의 사유와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식 공조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보완하여 절차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중대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협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u></p>
<p>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공조의 범위)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존,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임시 확보·제공 및 가입자정보의 확인</u></p>
<p><u>&lt;신설&gt;</u></p>	<p><u>제30조의2(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한 긴급 공조요청)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u></p>

여 전자정보의 멸실 또는 변경의 위험이 현저하고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전, 로그기록 등의 임시 확보 등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직접 공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공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긴급 공조요청의 사유와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식 공조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보완하여 절차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